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28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가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9조의3(현충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의 특례) 국가는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택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전에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 현행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사업에

1) 참고자료 1. 참조

2) 참고자료 1. 참조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어 있음.

- 그런데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시는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어 건립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 등의 평택시가 추진하는 현충시설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 등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74조의4까지의 규정³⁾에 따라 국가보훈부로부터 현충시설 지정 등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 제29조의3 후단에서 “이 경우 평택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전에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훈부의 입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

3) 참고자료 2. 참조

4) 국가보훈부 입장은 다음 쪽의 관계부처 의견 참조.

또한, 2019년 7월 설치가 완료된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 한미동맹 상징조형물⁵⁾에 소요된 예산은 9억 1,8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에 ‘현충시설’ 건립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⁶⁾에 의거 지자체에 현충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 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5) 참고자료 3. 참조

6)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평택시에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 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현충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충시설 등으로의 지정 가능 여부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

※참고자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

2.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충시설 관련 규정

제8장의2 현충시설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기 설치된 한미동맹 상징조형물

- 위치/규모 :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 / 15m×15m×5m
- 기간/예산 : '17. 5월 ~ '18. 9월 / 9.18억원
- * 제막 행사 : '19. 7. 10.(수)



- ① 주탑(동행) : 한·미가 협력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
- ② 각 군 상징물 : 한·미 양국의 각 군 창설 및 주요 임무
- ③ 역사의 시계 : 한·미 양국이 함께 이겨낸 6.25 전쟁
- ④-1 역사의 벽 A : 6.25전쟁의 5단계별 주요 상황
- ④-2 역사의 벽 B : 6.25전쟁 이후 주요 사건